

25년을 사이에 둔 대화

고(故) 류길재 교수와 ‘인민위원회’

강웅천*

고 류길재 교수는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그리고 통일부장관으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의 초기 이론적 성과라 할 수 있는 박사학위논문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1947”(1995)은 중요한 문제 제기를 담고 있다. 북한의 소비에트화가 정설처럼 치부되던 1990년대 중반에 그는 인민위원회의 자발성과 북한 정치체력의 자율성을 역설했다. 이 문제 제기는 정치사회의 영역인 당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시민 사회의 영역인 인민위원회는 강했던 해방 직후 북한의 특수성에 대한 진단에 기초하고 있다. 김일성은 영악하게 인민위원회의 가능성을 포착하고 활용해 강력한 국가를 수립한 뒤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인민위원회를 무력화했다는 것이 류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나 류 교수는 국가기관인 인민위원회와 정당조직인 당의 관계를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관계로 잘못 치환했다. 또한 인민위원회를 평가할 때 선행되어야 할 사회주의 정치 이론, 특히 주권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간과했다. 인민회의·인민위원회의 기원과 변천 과정, 당·수령과 국가기관의 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한 단계 진전시켜야 할 과제는 이제 전적으로 후학들에게 맡겨져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주제어: 고 류길재 교수, 북한 국가, 소비에트화, 인민위원회, 인민회의, 주권기관, 집행기관, 조선로동당, 수령

*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1. 작은 인연, 큰 숙제

필자는 2016년 가을, 늦어도 많이 늦은 만학도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때는 고 류길재 교수가 이 학교의 교수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일련의 학교 행사에서 고인을 알게 되었을 때 필자는 고인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국정 농단으로 국민의 탄핵 요구에 직면한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분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고인이 국정 농단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정권에 참여한 데 대한 참회를 용기 있게 표명한 것도 알게 되었지만 선입견은 개선되지 않았다. 필자와 다른 세계에 계신 분, 다른 관점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벽을 쌓았다고나 할까?

필자가 고인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은 것은 시간이 흘러 그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을 맡으면서였다. 고인의 건강이 매우 안 좋아졌다고 듣고 있을 때였다. 필자의 논문을 심사하느라 고인의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속에 처음으로 가까운 자리에서 대면한 그는 유쾌했다. 줄고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와 논의해 수정하면 되겠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주었다. 얼마 후 박사과정 면접에서 필자는 다시 면접위원으로 앉아 있던 고인과 만났다. 필자가 짤막하게 지원 동기를 발표한 직후 그는 짧은 한 마디를 던졌다. “끝!” 면접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는데, 결과로 미루어보건대 고인이 심사한 필자의 논문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이었다. 필자는 고인의 권유에 따라 박사과정 첫 학기에 고인의 ‘북한사연구’ 강의를 수강했고, 그 강의 중에 고인은 수시로 필자의 면학을 격려하고 기대감을 표해 주었다.

고인에게 선입견이 있던 필자를 그가 편견 없이 대해 준, 오직 필자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난 이 과정이 필자가 고인과 맺은 개인적 인연의 전부다. 지금 이런 권위 있는 학술지의 특별 기획에 기고할 정도의 인연은 분명 아니다. 필자가 고심 끝에 이 글을 쓰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그런 개인적 인연과는 거리가 멀다. 필자가 늦은 나이에 북한 공부를 해 보겠다고 생각한 것은 남북한의 역사를 하나의 메커니즘 속에서 통관하는 ‘남북통사’를 기획해 보려는 욕심에서였다. 그런 생각 아래 이런저런 자료를 살피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향후 연구의 주제로 ‘인민위원회’를 낙점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에 관한 연구였다.¹⁾

필자의 구상을 접한 몇몇 지인은 인민위원회가 류길재 교수 등의 연구를 통해 이미 어느 정도 규명된 주제 아닐까 하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²⁾ 그런 우려가 아니더라도 류 교수는 필자가 상의해야 할 선학(先學) 중 한 명이었다. 고인에 대해 마음의 벽을 쌓고 있던 이전의 필자라면 번민했겠지만, 그때는 서로 생각이 달라도 얼마든지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였다. 또 고인이 흔쾌히 필자의 문제의식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리라는 확신도 있었다. 그러나 고인은 이미 필자와 논의를 주고받을 수 없을 만큼 병세가 악화된 상태였다. 필자가 연구의 즐거움을 잡아 갈 무렵 그의 부고가 들려 왔다. 그때 필자가 느낀 상실감은 앞에서 밝힌 대로 개인적 인연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필자의 연구에 동기를 부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선학을 잃었

1) 그 취지에 관해서는 강웅천, “인민위원회의 기원과 변천: 주권기관과 행정기관의 관계로 본 북한 정치사,” 『현대북한연구』, 제23권 1호(2020), 39~74쪽 참조.
 2) 류길재,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1947”(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참조.

다는 안타까움에 가까웠다. 어찌 보면 고인이 필자에게 커다란 숙제를 남기고 떠난 것 같기도 하다. 이 글은 필자가 그런 상실감과 부채감 속에서 25년 전의 고인을 불러내어 나누는, 늦어도 한참 늦은 대화라고 할 수 있겠다.

2. 인민위원회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

류길재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은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1947”이라는 제목이다. 이 제목은 두 가지 점에서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첫째는 북한에도 인민위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환기한 점이고, 둘째는 그 인민위원회가 북한의 국가 건설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필자처럼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세대에게 인민위원회는 일종의 신화였다. 그것은 해방 후 방방곡곡에서 자발적으로 출현했으나 미군정의 탄압을 받고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민중의 자치기관이었다. 인민위원회는 역사적 실재였으나, 만약 살아남았다면 민중의 정치적 조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는 회한 같은 것이 그것을 신화로 만들었다. 다만 필자에게 인민위원회의 기억은 분단의 영향 아래 줄곧 남한에 국한되어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조직이니까 북한에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당연히 전제되는 바였으나, 그쪽에는 특별한 관심이 가지 않았었다. 류길재 교수의 논문은 기억의 저편에 있던 북한의 인민위원회를 상기시켜 주는 동시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 인민위원회는 남한과 달리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북한에서 인민위원

회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 인민위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처럼 류길재 교수의 논문은 잊고 있었던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궁금증을 자아내며 지적 호기심을 강하게 유발했다. 남한에서 소멸된 인민위원회가 북한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면 그것은 북한뿐 아니라 남한 현대사를 연구하는 데도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민위원회의 지향이 북한으로 축소되어 그곳에서 일정한 결과를 낳았다면, 남한에서도 인민위원회의 가능성을 유추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문에서 다루는 시기가 1947년까지로 특정되어 있는 것도 궁금증을 자아냈다. 북한이라는 국가가 1948년 9월 9일 수립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논문은 왜 1947년까지만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을까? 인민위원회가 국가 건설의 초석이 된 뒤 해체되거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뜻일까? 표지를 넘기기도 전에 필자는 이처럼 풍성한 질문의 보따리를 안고 논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논문에서 보이는 류길재 교수의 문제의식은 필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 문제의식은 다음의 인용문에 요약되어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국가건설 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체로 소련의 개입에 의한 “소비에트화” 또는 외삼국가의 수립과정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일정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착수되었다. 소련의 영향력이란 그것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한 사회가 과거에 축적해 왔던 역사적 경험과 구조적 조건에 첨부되는 하나의 요인일 뿐이지, 유일한 또는 최우선적인 요인은 될 수 없다. 따라서 북한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던 나라들의 국가건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회내부의 정치적·사회경제적 조건과 그 사회를 둘러싸고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제국가체제를 검토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³⁾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1990년대 중반의 시점에서는 논쟁적인 문제 제기였을 것이다. 초기 북한 연구의 초점은 북한 내부의 정치 과정보다는 미소의 점령 정책과 그에 조용하는 정치 세력의 이합집산에 맞춰져 있었다. 냉전 시기를 풍미한 전통주의 연구는 북한이 ‘소비에트화’의 길을 거쳐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는 과정을 입증하고 서술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인민위원회는 소련이 북한의 정치와 사회를 장악하는 데 이용한 수단쯤으로 치부되었다.⁴⁾ 류길재 교수는 “이(전통주의 - 필자) 연구들에서 인민위원회는 단지 소련이나 김일성에 의해 조직화되고, 활동의 방향이 정립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조종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⁵⁾라고 했다. 그러한 비판 의식에서 류 교수는 전통주의 연구에 반기를 들고 제3세계 민족운동의 자율성에 주목한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었다.

아마도 **인민위원회의 자발성**에 주목했던 유일한 학자는 커밍스일 것이다. …… 인위의 활동이나 성격이 소련군에 의해 강제적으로 왜곡되었거나 변질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어야 할

3) 위의 글, 307쪽.

4) 로버트 스칼라피노(Robert Scalapino)·이정식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한홍구 옮김(파주: 돌베개, 2015); 서대숙,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연구』(서울: 화다, 1985); 양호민,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2) 등 참조.

5) 류길재, “북한정권의 형성과정: 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연구,”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43쪽.

것은…… 커밍스가 말했던 “북풍의 남하”를 위해 북한 지역만이라도 민주적인 개혁을 시도해야겠다는 김일성과 지도부의 의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부의 의도, 즉 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해방 직후부터 약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조직화를 이룩하여 지방정권의 역할을 수행한 인민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 때문이었다.⁶⁾(강조는 필자)

인민위원회의 ‘자발성’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김일성 등 북한 정치 세력의 ‘자율성’은 류길재 교수의 인민위원회 연구에서 핵심 주제를 구성한다. 이 논문이 발표된 1990년대 중반은 그런 주장을 펼치는 데 결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1980년대에 반쪽 주목받은 커밍스의 수정주의는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한 뒤 그곳에서 해체된 기밀문서들을 통해 비판을 받고 있었다. 북한의 소비에트화도 재조명되는 분위기였다. 그런 시기에 류 교수가 위와 같은 주장을 편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다. 그에게 인민위원회는 “시민사회로부터 자발적으로 조직화”되고 “처음부터 좌익세력에 의해 조직화되고 조종되지 않았”⁷⁾던 북한 정권의 맹아였다. 그는 나아가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가 공산당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조직화되었던 특수한 사례”⁸⁾로 해방 후의 북한을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이 같은 류길재 교수의 문제의식에 기본적으로 공감했다. 소련이 북한의 국가 수립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것이 북한 정치 조직의 자발성과 정치 세력의 자율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소련이 빅브라더처럼 북한을 좌지우지했다는 인상을 주는 사료와 해설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에 것처럼 이론적 중심을

6) 류길재,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1947,” 122~123, 191쪽.

7) 위의 글, 122쪽.

8) 위의 글, 310쪽.

잡고 있었던 류 교수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필자가 류길재 교수의 논문을 처음 접한 것은 개인적으로 인민위원회가 연구 주제는커녕 특별한 관심의 대상도 아닐 때였다. 그때 이 논문은 분단에 가렸던 필자의 좁은 시야가 북한으로, 나아가 한반도 전체로 넓어지고 그런 관점에서 인민위원회를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를 제공했다. 약간의 시간이 흘러 필자가 인민위원회를 연구 주제로 택하고 문제의식을 예각화했을 때, 필자는 다시 25년 전으로 돌아가 류 교수와 마주앉게 되었다.

3. 인민위원회 연구의 몇 가지 문제

필자는 해방 직후의 북한 사료를 보다가 한 가지 특징적인 현상에 주목했다. 당시의 신문, 잡지, 회의록 등에 등장하는 여러 단어 가운데 ‘민주주의’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었다. 북한뿐 아니라 남한의 좌익 계열 문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확한 통계를 내 보지는 않았지만 ‘인민’, ‘계급’, ‘혁명’ 등 좌익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자연스럽게 해방 후의 민주주의 문제를 천착하다가 좌익 계열이 민주 정부의 토대로 간주한 인민위원회에 관심이 갔다. 그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떠올랐다. 왜 인민위원회였을까? 인민위원회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말뜻으로는 위임을 제공하는 상급 기관을 필요로 할 것 같은 ‘위원회’가 왜 정권 기관으로 간주되었을까?

이 같은 의문을 품고 인민위원회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다시 류길재 교수의 25년 전 논문과 만나게 되었다. 필자가 처음 논문을 접했을 때 떠올렸던 질문들도 다시 한번 불러 나와 류 교수와의 대화

에 동원되었다. 그때 필자가 25년 전의 류 교수와 주고받은 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류 교수는 논문의 시간적 범위를 해방 직후부터 1947년 2월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이 적절한 범위였을까? 북한의 국가 건설에서 인민위원회가 담당할 역할을 규명하려면 최소한 북한 정권이 수립되던 1948년까지는 포괄해야 하지 않았을까? 류 교수의 답은 이렇다.

47년 2월 ‘북조선 인민회의’와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수립되는 때까지를 범위로 하여…… 인민위원회(이하 인위) 조직의 발전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북한의 국가건설을 설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위를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이 기간에 북한에서 장차 형성된 강력한 국가의 단초가 완벽하게 성립되었기 때문이다.⁹⁾

이 말은 기본적으로 옳다. 그러나 북한 초기 역사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가 그렇듯 류 교수는 인민위원회에 집중하느라 ‘북조선 인민회의’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인민회의’야말로 필자가 가정했던 ‘인민위원회에 위임을 제공하는 상급 기관’이었다. 북한 최초의 전국적 선거를 통해 수립된 인민회의의 위상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사회주의 정치 이론의 ‘주권기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류 교수는 북조선인민회의를 의회민주주의 국가의 입법기관 정도로, 따라서 북조선인민위원회라는 ‘정권기관’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기관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갔다.¹⁰⁾

9) 류길재,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1947,” 7쪽.

10) 북조선인민회의 수립의 근본적 의의를 간과하고 해방 후 북한 주권기관의 계보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북조선인민위원회’로 정리하는 것은 1990년대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서 보이는 현상이다. 예컨대 정해구, “북조선임시인민위원

1947년 2월에 진짜 일어난 일은 합법성을 미비한 임시 주권기관(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으로부터 합법적 주권기관(북조선인민회의)으로 정권이 이양된 것이었다.¹¹⁾ 북조선인민회의는 ‘유일한 인민주권’을 대표하는 합법적 주권기관이고 북조선인민위원회는 그 산하의 집행기관이었다. 필자는 류 교수가 이 시점에야 등장하는 ‘인민회의’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랬다면 그때까지 임시 주권기관 역할을 해 온 인민위원회도 다른 각도에서 보고 그 기원과 성격도 들여다보게 되었을 것이다. 나아가 정립된 인민회의·인민위원회 체제가 이후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에서 담당할 역할도 더 살펴볼 필요를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류 교수는 해방 후의 여러 정치 세력 가운데 유독 김일성이 인민위원회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적절히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류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일성은 영악하게도 인민위원회를 활용하여 사회혁명을 수행했고, 나아가서 자신의 권력기반인 공산당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여러 부분에서 검토했듯이 남북한의 어떤 지도자도 인민위원회가 갖고 있는 이러한 잠재적 힘을 가장 정확하게 간파한 지도자는 없었다.¹²⁾

김일성은 북한 각 지역 인민위원회를 통할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토지개혁을 단행해 권력의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회·북조선인민위원회 연구,” 『국사관논총』, 제54집(1994) 참조.

- 11) “인민회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북한관계사료집』, 제36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7) 참조.
- 12) 류길재,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1947,” 234쪽.

또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위원장도 맡아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을 주도했다. 따라서 그가 ‘영악하게도 인민위원회를 활용’했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김일성이 아니더라도 좌익 계열 지도자들은 대체로 인민위원회의 잠재력을 충분히 간파하고 있었다. 류 교수는 박헌영이 정권 형태만 ‘인민정권’이라 지적하고 ‘인민위원회’에는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¹³⁾ 실제로는 김일성이 귀국하기도 전에 박헌영과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위원회를 정권기관으로 하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있었다.¹⁴⁾ 중국 화북 지역에서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해 활동하던 ‘연안파’는 다소 늦게 귀국했지만 인민위원회와 인민회의의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김일성이 국내파·연안파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인민위원회의 남북 연계를 강조한 그들에 비해 북한 지역 인민위원회의 독자성을 증시한 데 있었다. 김일성이 진짜 영악했던 점은 미소 분할 점령의 현실을 간파하고 북한의 독자적 정권을 추구하는 데 인민위원회를 활용한 것이 아니었을까?

셋째, 류 교수는 인민위원회를 시민사회의 영역, 공산당을 정치사회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은 류 교수가 김일성의 권력 장악과 강력한 북한 국가의 등장을 설명하는 수단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과연 적절한 기준에 따른 구분이었을까? 류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 보자.

북한의 국가건설과정이 정치사회의 영역인 공산당의 역량이 성숙한 후

13) 위의 글, 165쪽.

14) 김일성의 공식 귀국일은 1945년 9월 19일로 알려져 있으나 이미 8월 말에 들어왔다는 설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도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참여한 인민위원회나 그 전신은 전국적으로 조직되고 있었다.

에…… 그 주도권하에서 시민사회가 위로부터 조직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 역의 과정, 즉 시민사회의 자발적 조직화가 단순히 시기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선행한 후에 오히려 시민사회의 조직화에 정치사회가 기반하여 성장·발전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나아가서 정치사회가 통합하여 거꾸로 시민사회를 무력화시키는 역전의 과정이 벌어짐으로써 시민사회에 대해 절대적으로 자율적인 강력한 국가가 융기(隆起)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하였다.¹⁵⁾

위 글을 필자 나름대로 요약하자면, 김일성은 인민위원회를 이용해 권력을 잡은 뒤 그 인민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만이라면 아마도 사실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인민위원회를 국가와 대립하는 시민사회의 영역에 한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인민위원회가 사회의 여러 계층과 직군을 망라한 조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결코 오늘날 한국의 시민 단체 같은 시민사회 조직이 아니었다. 반대로 인민위원회는 고도로 정치적인 조직이었다. 비상 입법권을 보유하고 행정, 사법 등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정권 기관이었다. 따라서 인민위원회는 정권기관, 조선로동당은 정당기관으로서 류 교수의 분류에 따를 때에도 둘 다 정치사회의 일원이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류 교수가 말하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조직화’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합류한 노동자, 농민, 여성, 종교 등의 단체에 더 적합한 말이 아니었을까?

류 교수가 굳이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를 구분한 것은 이른바 ‘당국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인민위원회라는 자생적 정권기관을 직업 정치인들의 정치 결사인 당이 장악해 나간 현상에 그러한

15) 류길재,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1947,” 307쪽.

이분법의 틀을 적용했으리라는 것이다. 당과 국가기관의 갈등 관계는 이미 러시아혁명 당시 볼셰비키와 소비에트 간의 갈등 관계까지 그 기원이 올라간다.¹⁶⁾ 사회주의 정치 이론에 따르면 국가권력은 소비에트 같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기구에 집중되어야 하고, 직업 혁명가의 결사체인 당은 그 국가권력을 지도해야 한다. 당이 국가를 지도한다면 서 사실상 직접 통치에 나서 국가기관들을 수족처럼 부리는 현상은 북한뿐 아니라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공통으로 지적되는 문제이다. 북한 정치사를 보면 국가 건설 과정뿐 아니라 훗날 당과 수령이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과정에서도 인민위원회가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그때 인민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사회의 영역에 속하는 강력한 국가기관이었다.

4. 인민위원회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하여

필자는 앞서 류길재 교수가 다른 많은 연구자처럼 인민위원회에 비해 인민회의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류 교수가 인민회의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류 교수는 북조선인민회의와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 과정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다.

16) V. I. Lenin, "Our Tasks and the Soviet of Workers' Deputies," Marxists Internet Archive,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05/nov/04b.htm>(검색일: 2020년 4월 20일); 도희근, "소비에트제도의 성립과 변천에 관한 헌법이론적 연구,"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3권 1호(1993), 3쪽 참조.

‘북조선 인민회의’는 “조선에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수립되기까지 북조선 인민정권의 최고기관”의 구실을 하였다. 인민회의는 입법권의 행사와 더불어 제정된 법령을 집행할 수 있는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는 국가의 최고권력을 행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지난 1년 동안 북한을 사실상 통치해온 중앙권력기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대신해서 “임시”를 떼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그 조직구성을 위원장인 김일성에 위임하였다. 말하자면 최초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내각이 구성된 것이다.¹⁷⁾

여기서 북조선인민회의에 대해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최고권력’이라고 한 규정은 정확하다. 인민회의는 소련의 소비에트에 해당하는 국가권력기관으로서, 북한에서는 국가권력기관을 ‘주권기관’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중앙권력기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대신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잘못된 표현이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분명 해방 후의 비상 상황에서 입법과 집행을 겸한 임시 주권기관이었다. 그런데 그 주권기관의 지위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아니라 북조선인민회의로 넘어갔다. 북조선인민회의의 집행기관으로 규정된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똑같은 ‘중앙권력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류길재 교수가 이 같은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관계를 몰랐던 것은 아니다.

인민회의가 범명문상 “최고주권기관”이라면, 인민위원회는 “최고집행기관”이다. 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주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구성되고, 다시 이 대의원들이 인민위원회라는 집행기관을 구성한다. 이 같은 방식은 지금도 북한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¹⁸⁾

17) 류길재,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1947,” 281~282쪽.

18) 위의 글, 282쪽.

이 글은 북조선인민회의가 ‘주민들의 직접투표’ 아닌 각 지방 인민위원회 대표들의 간접선거로 조직되었다는 사실을 빼면 옳다. 이처럼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주권기관이 아니라 주권의 집행기관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류 교수는 왜 그것을 중앙권력기관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원칙적 규정과는 별개로 김일성이 위원장을 맡은 북조선인민위원회에 실질적인 권력이 실려 있었던 현실 때문일 것이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막강한 집행권을 위임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집행기관과 달리 북조선인민회의의 휴회 중의 입법권까지 보유하고 있었다.¹⁹⁾ 게다가 당시 지방에서는 아직 인민회의가 수립되지 않고 ‘전통의’ 인민위원회가 주권기관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 결국 류 교수가 1947년 북한 정치체제에 관한 서술에서 빛은 약간의 혼선은 주권기관의 구성에서 짧은 기간에 큰 변화가 일어나던 당시 현실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류길재 교수는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의 법적, 제도적 규정은 언급하고 있지만 그 현실적 함의와 효과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다. 인민회의가 인민위원회보다 더 근본적 의의를 지니는 주권기관이라면 왜 해방 직후에는 인민회의가 없었을까? 입법과 행정을 겸한 임시 주권기관으로 활동한 인민위원회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1947년에야 정립된 인민회의·인민위원회 체제는 북한의 정권 수립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 같은 의문들이 잇따라 일어났을 법한데 류 교수의 논의는 1947년에서 멈추어 있다. 그 이유로 짐작되는 것 중 하나는 언필칭 주권기관이라는 인민회의의 실제 정치적 비중에 대한 류 교수의 판단인 것 같다. 그가 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승인하고 합법성을

19) “북조선인민위원회에 관한 규정,”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북한관계사료집』, 제5권(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7), 147쪽.

부여하는 “고무도장(rubber stamp)”²⁰⁾에 불과하다고 단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문에서 그는 이 같은 당국가의 틀을 다소 성급하게 북조선 인민회의 단계까지 소급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북조선인민회의 수립의 기반이 된 1946년 11월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 선거의 결과에 대해 류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노동당원(북로당원 - 필자)은 31.8%를 점유하였다. 얼핏 보면 노동당원들이 과소대표된 것 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선거 당시 노동당원수를 40만 명이라고 추정하면 총유권자중 노동당원수의 비율은 약 10%정도가 된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히 **과잉대표**된 것이고 노동당이 북한의 패권정당임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²¹⁾(강조는 필자)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 대표들과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간접 선거로 선출한 북조선인민회의에서는 북로당원이 36퍼센트의 점유율을 기록했다.²²⁾ 총유권자의 10퍼센트가량 되는 당원을 보유한 북로당이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과 북조선인민회의 대의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했다고 해서 이를 ‘과잉대표’라고 할 수는 없다. 한 정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는 대개 그 당의 당원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인용문의 논리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국회 의석의 약 60퍼센트를 휩쓴 것도 과잉대표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체 당원 역시 총유권자의 10퍼센트가량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정당 간 경쟁을 초월한 사회주의 국가의 유일당 체제와 끊임없는 경쟁 구도 속에 있는 의회민주주의 국가의 정당 체제 사이의 차이를 류길재 교수

20) 류길재,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1947,” 282쪽.

21) 위의 글, 273쪽.

22) 정해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북조선인민위원회 연구,” 257쪽.

가 몰랐을 리 없다. 보편화되어 있는 당국가의 틀로 북한의 정권 수립 과정을 설명해 보려다가 다소 무리를 한 게 아니었을까 짐작해 본다.

결국 류 교수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했던 당이 인민위원회를 통해 세력을 키운 뒤 북조선인민회의 단계에서 완전히 ‘패권’을 장악했다고 본 셈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주권기관이라는 사회주의 국가 이론의 핵심 요소, 그에 기초한 인민회의·인민위원회 체제에 대한 구체적 분석으로 나아갈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류 교수도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의 당이 수립되고 국가를 장악하는 과정에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당이 혁명 과정에서 지도력을 확립하고 국가 수립을 주도한 중국, 쿠바 등과 달리 북한의 당은 분단의 규정을 받으면서 지연되고 왜곡된 성장 과정을 거쳤다.²³⁾ 한국전쟁 이후 당의 유일적 지도를 관철해 나가는 과정도 당 자체보다는 수령의 유일적 지위를 확립하는 데 집중되는 특수성을 보였다. 1947년 이후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가 어떤 변화의 경로를 밟았고, 그 과정에서 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더 면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류길재 교수의 25년 전 논문에 대한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좀 더 세밀한 탐구가 필요해 보이는 문제를 나름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권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성되는 사회주의 국가기관 체계

23) 북조선로동당과 남조선로동당이 합당한 조선로동당은 1948년 제1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27.4퍼센트를 차지했다. 조선로동당은 1957년 제2기 선거에서 최고인민회의의 의석의 82.8퍼센트를 차지했고, 1962년 제3기부터 100퍼센트 가까운 의석을 휩쓸게 되었다. 이계만,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분석,” 『통일문제연구』, 제9권(1991), 27쪽.

를 그 원리와 실제 역사의 측면에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구성 원리는 권력분립을 부정하고 권력을 주권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 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²⁴⁾ 북한은 처음부터 사회주의를 지향했고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를 자임하고 있다. 그러한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은 먼저 사회주의 원리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그로부터 얼마나 이탈했는지, 그 내적 모순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회민주주의 체제 일반이나 한국의 정치 체제와 비교하는 것은 그다음의 일이다.

둘째, 위와 같은 원칙 아래에서 해방 후 인민위원회의 기원과 변천 과정에 대해 좀 더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레닌그라드 구하기(Спасти Ленинград)>라는 러시아 영화를 보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함락 위기에 처한 레닌그라드 주민들을 큰 배로 대피시키는 내용의 영화였다. 큰 배에 탄 군상 가운데 ‘내무인민위원’이 등장하는데, 대단한 권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고 있었다. 그때 필자는 그 인민위원과 해방 후 한국의 인민위원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어 소련의 역사를 뒤져 보았다. 그 결과 소련 초기의 국가기관 체계에서 인민위원회(Совет Нар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가 주권기관인 노동대표소비에트 산하의 행정기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²⁵⁾ 1930년대 중국에서

24) 김택영,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주권기관과 국가집행기관,”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북한관계사료집』, 제7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9), 294쪽.

25) Конституция СССР 1924 г, сайт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constitution.garant.ru/history/ussr-rsfsr/1924/>(검색일: 2020년 1월 25일). 소련에서 주권기관은 국가권력기관(орган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власти)이라고 불렸다. 이는 중국, 베트남, 쿠바 등 현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주권기관, 국가권력기관, 정권기관 등은 다 같은 뜻이다. 소련에서 인민

수립된 중화소비에트공화국도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를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바 있었다.²⁶⁾ 이 같은 사실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 잘 알려져 있었다.²⁷⁾ 물론 소련·중국의 인민위원회와 해방 후 행정기관과 주권기관의 역할을 겸한 인민위원회는 다르다. 그러나 1947년 2월 이후 인민위원회는 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서 소련·중국의 인민위원회와 같은 지위와 역할을 찾아 간다. 이 같은 북한 인민위원회의 변천 과정은 사회주의 국가 이론과의 관련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주권기관이 사회주의 국가기관 체계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인민회의의 수립과 변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류길재 교수의 논문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북한이라는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국가를 지도하는 조선로동당의 관계가 엄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북한의 특수성과 관련해 당을 압도하는 수령과 국가의 관계, 수령과 주권기관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필자의 관찰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기관 체계를 수령제에 종속시키는 과정에서 ‘전통의’ 인민위원회를 다시 활용했다. 중앙에서 사라졌던 인민위원회를 주석 밑에 중앙인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키고 그

위원회의 ‘회’에 해당하는 말은 소비에트(Soviet)인데 이는 ‘평의회’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소련의 주권기관을 가리키는 ‘소비에트’는 ‘노동대표평의회(소비에트)’를 줄인 말이다.

26) “中华苏维埃共和国宪法大纲,” 中共中央文件选集, 中文马克思主义文库. <https://www.marxists.org/chinese/reference-books/ccp-1921-1949/07/066.htm> (검색일: 2020년 2월 5일).

27) 『최근의 세계적 8대 풍운아』 『개벽』, 제46호(1924.4.1.), 76쪽; 『신어사전(新語辭典)』(서울: 청년조선사, 1934); 『신어사전』(서울: 민조사, 1646). “한국 근대 신어의 성립과 변천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구축,” 한국 근대 신어 DB(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참조.

곳에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라는 전대미문의 지위를 부여했다.²⁸⁾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 중앙인민위원회는 종종 수령의 국가적 표현인 주석의 ‘유일적 영도’를 뒷받침하는 도구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국가의 최고 영도자’를 떠받치는 ‘국가주권의 지도기관’이 국방위원회, 국무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은 북한 정치의 특수성에 관한 지표의 하나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술한 헌법 수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주권기관이라는 최고인민회의의 헌법적 지위는 정권 수립 이래 단 한 번도 변화가 없었다. 북한을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인민회의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기관 체계를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넷째, 해방 후 전국적으로 나타난 인민위원회가 미군정의 탄압으로 남한에서 소멸되었다는 점에서 남북한을 관통하는 인민위원회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류길재 교수를 포함해 모든 연구자들이 공감해 온 바이기도 하다. 인민위원회에 부여된 민주주의 과제는 남한에서는 좌절되었고 북한에서는 왜곡되었다. 남한 국민은 인민위원회 없이도 빈곤과 독재를 이겨내고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4.19혁명, 6월 항쟁 등을 통해 수립된 정치체도가 대표성과 책임성에서 문제를 보일 때면 해방 직후 인민위원회가 보여준 가능성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국민 일반의 폭넓은 참여와 조직화를 의미하는 그 가능성이 북한에서 왜곡되고 악용되었다고 해서 그냥 방기할 문제는 아니다. 해방 후 인민위원회의 합리적 핵심을 추적하고 북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는 통합적 연구는 포기할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로동신문』, 1972년 12월 28일.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5. 새로운 시작

필자는 류길재 교수의 논문을 검토하고 관련 주제를 탐구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고인과 토론할 기회가 없었다. 류 교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인민위원회가 필자의 본격적인 관심사가 아니었고, 관심을 키워 갈 무렵에는 고인과 이야기를 나눌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영원히 대화와 토론의 기회가 없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개인적인 교류의 기억이 거의 없는 고인의 빈소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을 보고 울컥한 것은 그래서였을지도 모르겠다.

고인의 논문을 찬찬히 읽고 생각을 정리하며 글을 쓰는 동안 몇 번이나 그런 아쉬움을 느꼈다. 그럴수록 더 꼼꼼히 읽고 노트를 하며 고인과 상상의 토론을 주고받았다. 약간의 과장을 섞어 말하자면 그러는 동안 죽을 때까지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공부거리를 쌓긴 것 같다. 필자가 공감했던,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한 고인의 25년 전 생각을 잘 보여 주는 글을 마지막으로 인용해 보겠다.

북한의 국가는 소비에트화의 소산에 불과하다는 단순한 견해로부터 일탈을 시도해야만이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북한체제**에 대해 좀더 객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또 다른 연구**의 시작일 것이다²⁹⁾(강조는 필자).

29) 류길재,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1947, 313쪽.

25년 전과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북한체제’는 다르다. 25년 전 고인이 북한을 이해하려고 한 목적과 지금 필자가 북한을 이해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마도 다를 것이다. 1995년의 고인은 어쩌면 20여 년 뒤에도 ‘살아 있는’ 북한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2020년의 시점에 이르러서도 북한은 시급하게, 그리고 면밀히 이해해야 할 연구 대상으로 남아 있다. 25년 전보다 그 필요성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필자가 25년 전의 논문으로부터 지금도 유효해 보이는 연구거리를 찾아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인은 지난 25년간 여러 방면에서 ‘또 다른 연구’를 시작했고 결실도 맺었다. 필자는 이제 고인의 25년 전 연구에서 디딤돌이 놓였던 ‘또 다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그 새로운 연구야말로 고인과 필자를 연결하는 작은 고리이건만 그것을 필자는 고인 없이 해 나가야 한다. 늦게 들어선 공부 길에서 가끔 그가 그리워질 것 같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로동신문』, 1972년 12월 28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엮음,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국가정보원 엮음, 『북한법령집 상: 2019.11』(서울: 국가정보원, 2019).

김남식 엮음, 『남로당연구자료집』 제1집(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4).

민주주의민족전선 엮음, 『해방조선 I 자주적 통일민족국가 수립 투쟁사』(서울: 과학과 사상, 1988).

『북한관계사료집』, 제5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7).

『북한관계사료집』, 제36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7).

서대숙,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연구』(서울: 화다, 1985).

스칼라피노, 로버트(Robert Scalapino)·이정식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한홍구 옮김(과주: 들베개, 2015).

『신어사전(新語辭典)』(서울: 청년조선사, 1934).

『신어사전』(서울: 민조사, 1946).

양호민,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2).

커밍스, 브루스(Bruce Cumings), 『한국전쟁의 기원』, 김자동 옮김(서울: 일월서각, 1986).

2) 논문

강응천, “인민위원회의 기원과 변천: 주권기관과 행정기관의 관계로 본 북한 정

- 치사,” 『현대북한연구』, 제23권 1호(2020), 39~74쪽.
- 도희근, “소비에트제도의 성립과 변천에 관한 헌법이론적 연구,”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3권 1호(1993), 1~22쪽.
- 류길재, “북한 정권의 형성과정: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엮음,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41~92쪽.
- _____,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1947”(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배경환, “중국국민당의 당국체제와 중국적 국민국가,” 『중국근현대사연구』, 제31집(2006), 1~19쪽.
- 와다 하루끼(和田春樹), “소련의 대북한정책 1945~1946,” 『분단전후의 현대사』(서울: 일월서각, 1983), 234~308쪽.
- 이계만, “북한 최고인민회의 분석,” 『통일문제연구』, 제9권(1991), 19~49쪽.
- 정해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북조선인민위원회 연구,” 『국사관논총』, 제54집(1994), 237~262쪽.
- “최근의 세계적 8대 풍운아,” 『개벽』, 제46호(1924).

3. 국외 자료

1) 기타

- Lenin, V. I., “Our Tasks and the Soviet of Workers’ Deputies,” Marxists Internet Archive.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05/nov/04b.htm> (검색일: 2020년 4월 20일).
- сайт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constitution.garant.ru>.
- Конституция СССР 1924 г, сайт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 constitution.garant.ru/history/ussr-rsfsr/1924/](http://constitution.garant.ru/history/ussr-rsfsr/1924/)(검색일: 2020년 1월 25일).
- “中华苏维埃共和国宪法大纲,” 中共中央文件选集, 中文马克思主义文库. <https://www.marxists.org/chinese/reference-books/ccp-1921-1949/07/066.htm>(검색일: 2020년 2월 5일).

A Dialogue Between 25 Years: The Late Professor Ryoo Kihl-jae and the People's Committee

Kang, Eungcheon(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s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nd former ROK Minister of Unification, the late Professor Ryoo Kihl-ja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 in both theory and practice to the progress of inter-Korean relations. One of his first theoretical achievements, a doctoral dissertation titled, “A Study on the People’s Committee in State Building in North Korea, 1945-1947” (1995), contains important questions to help one understand North Korea. In the mid-1990s, when North Korea’s Sovietization was widely regarded, he emphasized the spontaneity of the People’s Committee and the autonomy of North Korean political forces. His argument was based on the uniqueness of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when the Party’s influence was relatively weak and the self-sustaining capacity of the People’s Committee was strong. Professor Ryoo argued that Kim Il Sung cleverly discovered and utilized the possibility of the People’s Committee to establish a strong nation, then strengthened the Party’s control and neutralized the

People's Committee. Ryoo, however, mistakenly replac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s Committee (state), and the Party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and political society. His doctoral thesis also overlooked the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socialist political theory, espec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executive organs, which should have preceded in evaluating the People's Committee. The task of advancing the objectiv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to the next level through careful study on the historical origins and transition process of the People's Assembly and the People's Committee is now entirely left to his fellow scholars and juniors. Rest in peace, Professor Ryoo Kihl-jae.

Keywords: Ryoo Kihl-jae, state, Sovietization, People's Committee, People's Assembly, state power organ, executive organ, Workers' Party of Korea, supreme leader